

제433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1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1)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6)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6)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9)
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0)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6)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3)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6)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0)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1)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9)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0)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1)
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0)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2)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3)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4)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6)
2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8)
2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0)
2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1)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3)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3)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9)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1)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6)
 2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4)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2)
 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6)
 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7)
 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2)
 3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7)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1)
 3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4)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9)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0)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3)
 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6)
 4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2)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0)
 4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1)
 4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7)
 4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가. 교육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1) 4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6) 4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6) 4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9) 5
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0) 5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6) 5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3) 5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6)	5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490)	5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491)	5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9)	5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0)	5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1)	5
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0)	5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2)	5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3)	5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4)	5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6)	5
2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8)	5
2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6810)	5
2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811)	5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3)	5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3)	5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9)	5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1)	5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6)	5
2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4)	5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2)	5
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6)	5
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7)	5
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2)	5
3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7)	5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1)	5
3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4)	5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9)	6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0)	6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3)	6
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6)	6
4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2)	6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0)	6
4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1)	6
4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7)	6
4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6
가. 교육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법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을호 전 위원님의 의원직 사임에 따라 김준환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준환 위원님도 이의 없으신 거지요?

○김준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1)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6)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6)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9)
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0)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6)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3)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6)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0)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1)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9)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0)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1)
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0)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2)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3)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4)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6)
2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8)
2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0)
2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1)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3)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3)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9)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1)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6)
2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4)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2)
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6)
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7)
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2)
3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7)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1)
3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4)

-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9)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0)
-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3)
- 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6)
- 4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2)
-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0)
- 4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1)
- 4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7)
- 4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교육부 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3항까지 4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법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등 대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고유가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립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충하고, 쉬었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 부트캠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후속관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세입경정을 실시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국립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10쪽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수입 규모는 2026년 본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11쪽 회계·기금별 지출 규모입니다.

2026년도 추경예산안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4조 8109억 원이 증액된 111조 1717억 원

입니다. 예산은 4조 8109억 원 증액 편성해서 104조 2008억 원이며 기금은 변동 없이 6조 9709억 원입니다.

12쪽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4조 7703억 원 증액되어 86조 8869억 원이며, 고등교육 부문은 403억 원이 증액된 16조 795억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억 원 증액된 1조 1691억 원입니다.

13쪽 부문별 편성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보통교부금은 4조 5772억 원 증액한 73조 5821억 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은 455억 원 증액한 6764억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152억 원 증액한 2255억 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910억 원 증액한 1조 3528억 원, 디지털 교육혁신특별교부금은 405억 원 증액한 6013억 원입니다.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9억 9900만 원 증액한 62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고등교육 부문입니다.

산학협력력 고도화 지원 사업은 283억 원 증액한 2907억 6100만 원입니다.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은 120억 원 증액한 9228억 9800만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은 3억 원 증액해서 30억 5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최교진 교육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여야 간사님들께서 조율을 하셔서 총 일곱 분의 질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문정복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순이신데요. 오늘 오랜만에 강경숙 위원님을 시작으로 하고 여야, 여야 해서 문정복 위원님이 다음, 그다음에 김대식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숙 위원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강경숙 위원님도 야당이십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야당 위원님께 질의를……

○강경숙 위원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교진 장관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 26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었잖아요.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이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조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으니까 교육청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202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교육분야 지출혁신 추진계획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에 대해서 동의한 것입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어쨌든 무언가 모색해야 된다는 여론은 계속해서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연구라든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이거든요. 그러면 내국세 연동비율 20.79%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런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교육에 필요한 정해진 예산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실제로 학생 수가 일부 준다 그래서 바로 교육예산을 줄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강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실 학교 교육현장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아주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조율, 논의하고 의견수렴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당국의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향후에 개편안이 어떤 절차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재정분권 TF도 상반기 말에 발표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확정될 것인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국회 교육위하고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위하고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조율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에 대한 일몰입니다. 여기 초중고 밑에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한시 지원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 감축 후에 일몰을 검토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6년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부담하는 연간 5700억 원의 그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강경숙 위원**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교육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인데 거기 보면 지방세 세율 조정 특례가 있어서 교육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세,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표인데 여기 지방교육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 것이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에 더해서 지자체 이전수입이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담배소비세 전입금까지 일몰이 되면, 그것은 행안부에서 소관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의 전입금까지 일몰될 거라고 26년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일몰되면 재정 압박에 굉장히 많이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이중 삼중으로.

그런 부분을, 전 국민적인 여러 가지 여론들도 있겠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든지 교육의 심대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킬 것인지, 어떤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어쨌든 위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적어도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산정이 됐고 이것이 왜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 등의 몇 가지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고,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지출에 있어서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지금 소규모 학교가 한 30%가 넘어서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인가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목적사업으로 내려가는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가 같은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결론처럼 말씀 주신 실제로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하지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쩌면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인 개인의 맞춤형 투자가 필요한 이런 시기에 거기에 걸맞은 교육재정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호소드리고 합의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장관님, 이번 추경이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인 거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문정복 위원 이번 추경에 10개 부처가 해당이 돼요. 그중에 교육부가 해당된 것은 저는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부에게 4.8조라는 추경을 줘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정부의 속내를 좀 보자라고 하면 교육부에 4.8조를 교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법률 구조상 내국세 20.79%를 연동하다 보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4.8조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가, 가령 우리가 총액으로 교육청에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보내는 순간 교육청이 이것들을, 총액으로 내려왔고 나름대로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저희가 칸막이를 쳐서 비목을 결정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정부가 지침을 줬잖아요. 꼭 필수불가결한 것 특히 아이들 냉난방비 관련한 차이 그다음 학교운영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장관님, 그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문정복 위원** 그런데 교부금이 총액으로 교육청에 내려가는 순간 교육감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이 너무 커요.

PPT 한번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뭐냐면 홍보성 경비의 5년 합계하고 연수성 경비의 5년 합계거든요. 매년 늘어나요, 매년 늘어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4.8조가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교육청에. 그러면 교육감 마음대로 이런 데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비에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국회가 이것을 총액으로 교부하기만 해. 보통교부금 형태로 교부하기만 했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후에,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8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부가 제대로 썼는지,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썼는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 교육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때문에 내려보낸 건데 이것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이번 추경예산이 내국세가 늘어나서 거기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4조 8000억이라는 돈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추경이 전쟁추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매우 시급하고 긴급한 곳에 서둘러 집행해야 된다는 상황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각 시도의 사정을 보면 2023~2025년 동안 교부금이 3년 총 합치면 18조 정도 줄어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 돈 갖고 쓰시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니 그게 아니고,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필수예산을 서둘러서 꼭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실제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공공요금이나 특히 우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원거리 통학을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 이런 것에,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낭비성 홍보성 이런 곳에 쓰이지 않도록 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특히 지금 선거 국면이어서 시도의회에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추경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교육청이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 추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정복 위원** 그러세요. 국민의 세금이니만큼 그리고 교육부가 이게 꼭 원칙이 있어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한 추경이 아닌 만큼 정부가 요청한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교육부가 계속 감시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권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보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것 다 질문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것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장관님께서 교육감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것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런 홍보성·연수성 경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다른 것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으로 3억 원을 증액해서, 고졸자 거점학교 있지 않습니까. 3개교를 추가 선발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김대식 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중부권에 9개, 충청권에 6개, 경상권에 4개, 전라권에 5개 거점학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부산, 울산, 제주, 장관님이 교육감 했던 세종 이 네 군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국에 24개 학교가 운영 중인데 부산만 해도 단 1개도 없습니다. 제2의 수도 부산에 거점학교가 1개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이게 실제로 직업계고 졸업생들 중에서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급해서 우선은 사실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신청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실제로 신청을 하지 않았었고요. 이번에 3개를 추가하는 데는 부산에서도 여러 학교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꼭 부산에 있는 학교가 발견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요? 그것 다행인데, 이게 졸업자 취업 통계가 조금 덜 잡혔다 이렇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부산 직업계고 36개교에서 4729명이 졸업했어요. 그래서 취업자가 1146명, 그러면 55.3%입니다. 진학자 2567명 미취업자 925명, 미취업자가 19.5%에 불과한데 졸업생 미취업률이 19.6%면 전국을 계산한 평균 20.8%보다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경상권 전체를 보더라도 대구 1개, 경북 2개, 경남 1개 4개교로 배치돼 있는데, 부산 울산 말씀하신 대로 세종 이런 데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졸업자 숫자가 제일 많은 경상권에서, 부산 4729명이고 대구는 3387명, 경남 3139명, 경북 1498명, 338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구에 하나, 149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경북에도 2개가 있는데 대구보다 졸업생 1300명이 더 많은 부산에 거점학교가 없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어서 장관님께서 부산이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 믿어도 되겠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왜냐하면 그동안 실제로 전체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가 한 570개 정도 되는데 거점학교 27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신청을 하게 했었는데 그때 부산에서는 신청을 안 했었고요. 이번에는 신청을 여러 개 학교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꼭 필요한 데도 신청이 제대로 안 돼서 못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산하고 현재까지 신청 학교가 몇 개교나 와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부산에서 3개 학교가 신청했다고까지는 들었는데요.

○**김대식 위원** 부산에서 3개?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부산 3개를 포함해서 전체 9개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마 경상권에서 제일 졸업생 취업률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골고루, 모든 국민들 학생들이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위원장 김영호** 시간을 딱 맞추셨네요.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이번 26.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중동 위기로 인한 고유가 충격 또 물가 상승 등 여러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교육부 소관 추경을 보면 고유가 대비 에너지원 다변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하는 것, 태양광 발전 설비로 알고 있는데요. 또 지금은 재학생 위주로 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비재학생 청년들까지 확대해서 청년의 취업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사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기초가 민생 안정 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이런 정부의 추경 기초와 궤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도 신속한 심의 처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7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향후 교육재정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보았는데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감축 목표를 의무 지출 10%, 재량 지출 15% 이렇게 제시를 하고 지출 전반의 어떤 구조조정,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지출혁신 추진계획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언급된 것은 사실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성에는 물론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교부금 제도가 세수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육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또 감소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결손 또 추계 오류로 인해서 교부금이 감액되거나 미교부되는 사태도 반복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4조 불용됐었고요, 2024년도에 4조 3000억 원 삭감됐었고, 25년도에도 2조 원 정도 규모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재정의 핵심 기반이잖아요? 또 교육 현장의 필수 지출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재정 측면 논의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교육정책 전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제시된 건 아니지만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관계 부처 간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교육부가 중심을 딱 잡아 주셔야 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들이 이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거든요. 교육감들과 충분한 숙의 또 소통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중심에 교육부가 딱 중심을 잡아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하여간 저희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책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자체를 손대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아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구조를 통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적어도 국민들께 타당한 국민들께서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방침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일전에 법안심사소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통합시 논의할 때 고민정 간사님께서도 교육 자치에 대한 논의가 교육위가 아닌 행안위에서 주로 논의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부와 또 우리 교육위가 책임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 또 의무교육의 수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교육 또 교육재정 충실을 위해서 여러 방안 검토하는 데 저희 위원회도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교육위가 좀 협력해서 교육재정을 효율화하는 데, 하지만 또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중동지역 한국학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상황을 보니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중동 호르무즈해협 근처에 한국 선박이 20척 있다는 기사도 있고 40척 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일부 기사에 따라서는 식량과 식수도 부족하다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실습생이 얼마나 거기에 승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던 시점에 다섯 조 1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섯 명은 귀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 남아 있는데 남은 학생들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언제든지 귀국 의사를 밝히면 외교부랑 같이해서 귀국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 산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아마 장관님도 그 기사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신규 태양광 설치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에 대한 안전 관리와 노후 관리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노후 태양광으로 인한 화재가 여섯 건이 있었습니다. 두 달 전에도 양산 지역에서 태양광 시설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구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태양광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일단 대학에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대학에서, 총장님께서 그 관리를 포함한 예산은 대학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오래된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이 있는지 한번 각 대학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교육부 차원에서 일괄해서 지원해야 될 일이 있는지 이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사실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된 연한이 10년 가까이 된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님니다마는 장관님을 뵈 기회가 많지 않으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진단받은 후 출근해서 결국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파도, 특히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교사가 투입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고 가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 주시면 좋

겠습니다, 어떤 구조를 마련하실 것인지.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그 동료 교사들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데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사실은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고 선생님의 건강이 아이들의 건강이기도 하고, 특히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바로 미치는 전염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병가를 내실 수 있고 병가 내신 동안 수업에 부담을 지지 않으셔도 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기회에 전체 각 시도의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 지역에서 공립이나 이쪽의 지원 선생님들을 위한 또 사립유치원에서도 일주일 단위의 특별휴가를 대비한 대체교사 제도는 일정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의 병가까지를 책임지는 이것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해서 각 시도교육청하고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해서, 특히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공립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나 학교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하니, 다시 말해서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이고 하니 이곳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책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실제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요. 사실 이것을 개별 유치원의 부담으로 만들지 마시고 교육지청이나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일정한 수의 대체교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지원청별로 일정한 숫자의 대체교사, 수업 지원 교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한 방향을 잡고 한번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사안이 긴급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현안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학교 현장에서 이용하는 NEIS 프로그램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진선미 위원** 이게 예민한 정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도 되게 주의하고 있고 또 접근도 아주 권한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진선미 위원** 그런데 새 학기가 시작돼서 저희가 확인을 하다가 이게 나와서 좀 여쭙

보고 싶은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에 수강 신청 진행한다거나 학생 개인별 시간표 생성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이 개별정보를 관리해 주는 사설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확인하니깐 전국적으로 773개 학교가 사설업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 주는 내용을 보면 교사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 부담이 있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정보가 올곧이 사설업체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어떻게 하나면 교사 선생님이 관련된 NEIS에 있는 개인생활 정보를 일괄해서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를 개별정보를 관리해 주는 사설업체에 통으로 업로드를 시켜 주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아마 교육부에서 24일인가 공문을 내려보내신 걸로 압니다. 그건 다행인데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이거를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 업체에서 해 주는 대행 업무를 보면 굉장히 교사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설업체도 아마 퇴직하신 선생님이 만드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사설업체에 가고 거기 서버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심각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은 계속 공적 영역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완화시켜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공적인 영역의, 예를 들면 저도 정확하게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NEIS에 장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깐 일부는 아예 동의를 받지 않고, 학생·학부모 동의를 받는 방식도 보면 여기에 동의하는 내용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름, 연락처, 관계, 아이디 이것만 제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는 큰 문제없겠구나 이렇게 하고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성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민한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일괄 포괄해서 마치 아주 단순한 개인 이것만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진정한 동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에 대한 안전점검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관이 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그 사설 업체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설 업체의 개인 서버에 따로 보관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면 무슨 홍보나 광고를 위해서 이걸 넘겨준들 알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진선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733개나 되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해 보면 초·중등교육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약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정밀하게 교육부에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그 시스템은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NEIS에 기록된 학생들의 모든 것, 학적을 포함해서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업체의 선의에 기대서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던 게 그나마 다행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마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특히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실 업체의 법률 위반 행위가 없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런 조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의 긴급현안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정성국 위원입니다.

장관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7월 1일 공식 출범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정성국 위원** 이번 교육청 통합은 지난해 교육부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견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번 추경에서라도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 통합, 간판 교체라든지 공무원증 제작 등 여러 가지 물리적 비용이, 이런 기본적인 비용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랐던 것은 교육부가 지금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해 가지고 태양광 설비 확충에 한 130억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정성국 위원** 국립초등학교 3개교에 9.9억, 국립대 35개교에 120억 원입니다. 태양광 활용 설비 확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통합교육청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은 0원이고 태양광 사업에는 13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배정됐는데 지금 교육부 내부에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위해서는 당장 1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정성국 위원** 보겠습니다.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 비용이 약 60억 원, 시설 환경 재정비 비용이 약 52.4억 원, 통합 추진 전담조직 운영비가 약 5.2억 원 그리고 통합교육청 상징 CI 제작 및 광고비가 한 3억 원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태양

광 사업은 130억 원 배정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어쨌든 광주·전남 통합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120억보다 더 많고 우선 시급하게 120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광주와 전남의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다고는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반영 못 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장관님,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남·광주교육청 통합인데 어찌 보면 지금 이게 모범사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시설 환경 재정비 이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교육부장관 최고진** 사실 저희가 추경 필요 예산으로 신청하기는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은 어쩌면 행정통합에 따른 추가 예산을 별도로 고민하시는 것이 아닌가, 재정 당국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노력을 계속해서……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국 위원** 해서 이게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신다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설세훈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성국 위원** 오시면 제가 한번씩 요청드리니까 별로 기분 안 좋지요, 앓아 있는데?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아닙니다.

○**정성국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교육행정체제통합추진단 그것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정성국 위원** 그것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락 주셨는데 지금 전남교육청이나 광주교육청에서는, 현장에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통합지원단에 고루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성국 위원** 하고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정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3월 9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육부는 추가로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아주 올곧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1명도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정원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서 배정된 인원내 맞게끔 인력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광주와 전남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그다음에 공청회 등을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국 위원 물론 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에서는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같이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가 먼저 그걸 했어야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행안부하고의 정원 조정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담보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국 위원 실장님께서 교육부에서 높은 분이시니까 항상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3항까지 4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44항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고민정·조정훈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오늘 백승아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김대식 위원 우리도 그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도 서면질의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관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환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진선미

○청가 위원(1인)

김준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희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대변인 정병익
감사관 김도환
정책기획관 김홍순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영유아지원관 김정연